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불 운영지침 마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 때에는 발주기관장에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구청·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장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직접지급요청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되게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대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의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3자간의 명시적이고 동시적인 의사합치만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불에 대한 동의 등 어떤 형식으로든 인식하고 있는 묵시적·순차적 합의도 인정하기로 했다.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동시적 의사 합치뿐만 아니라 발주자·수급자 인식 맨 합의 인정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요건) 판단기준

- 하도급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요청이 있어야 하며, 직접지급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 등의 사유만으로는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 등과 관련하여 직접지급사유 요건이 먼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사업자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후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현행법상 직접지급 요청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요청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만 있으면 이 요건은 충족된다.

- 하도급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의 합의한 때)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의 합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반드시 3자간의 명시적이고 동시적인 의사합치만이 유효한 것으로 보서는 안 된다. 합의에 의해 직접 불이익을 받는 원사업자가 직불에 대한 동의 또는 직불 의사가 명백히 인정되고 또한 어떤 형식으로든 이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가 인식하고 있다면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묵시적·순차적 합의도 가능하다.

※ 관공사의 일반적인 직접지급 합의 형태는 발주자에 하도급 통지시 원사업자의 직불동의서를 첨부하는 형태이므로 발주자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직불 합의로 인정할 수 있다.

- 하도급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 2<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요청을 요청한 때)

하도급법시행령에 의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란 미지급한 하도급 기성분의 총액이 2회의 기성분에 해당할 때를 의미한다.

사유 발생 후 송달된 압류 등은 무효

■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 등이 있는 경우

-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예]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요건 충족→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 → 압류 및 전부명령

※ 법원의 (가)압류 등은 제3채무자(발주자)에 송달된 때 효력 발생

직접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채권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에 발주자에게 송달된 (가)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도 무효이므로 압류 등과 관계없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한다.

-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최초의 (가)압류



명령 등이 송달된 경우

[예]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 → 직접지급사유 발생 → 압류 및 전부명령

하도급법상 가압류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보전되었으므로 발주자는 직접지급의무가 없다. 특히 압류의 효력은 특별히 정한 경우(특별히 압류금액에 제한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 피압류채권의 전액에 미치므로(대법원 72마 1548 결정) 선압류 채권이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액보다 적어도 선압류 채권을 공제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직접지급과 임금 또는 국세 등의 체납처분의 관계

[예] 산재보험료 등의 체납→직접지급사유의 발생→체납처분(압류)

근로기준법·국세기본법 등에 의해 일반채권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는 임금채권·국세나 지방세·산재보험료 등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이러한 우선권은 체납처분(압류)을 전제로 배당절차에서의 압류권자에 대한 우선권을 의미하므로 압류 또는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발주자는 직접지급해야 한다.

무발주자 공탁해도 직접지급의무는 존속

■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와 공탁

-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하도급 부분에 관한 채권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함에 따라 발주자의 공탁은 무효이므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2000년 5월 11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결정 참조)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급사업자 등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은 적법한 공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다.

- ① 수급사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수급사업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공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하도급대금채권을 압류하거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채권 자체를 압류한 경우
- ③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보다 많은 경우
- ④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에 가압류 등이 송달되어 공탁사유가 발생하면 직접지급할 금액을 제외하고 집행공탁하는 경우

[예] 원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억원, 직접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5천만원,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로부터 압류된 금액 1억원인 경우 : 5천만원 직접지급하고 5천만원은 채무자(원사업자) 및 압류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

■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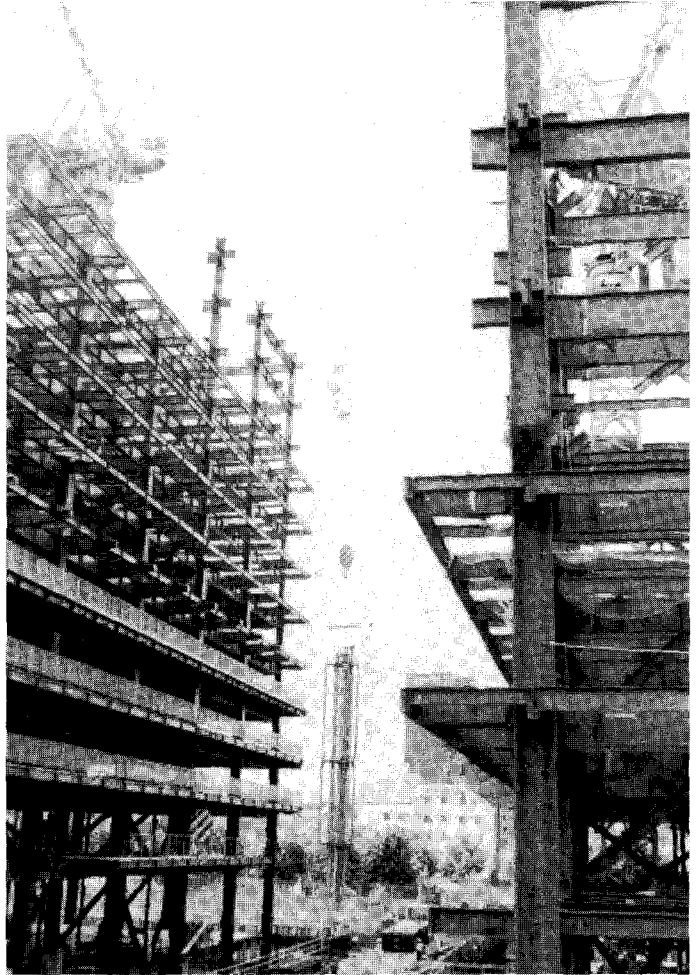
- 직접지급해야 할 금액의 확정
직접지급금액의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발주자는 직접지급할 수 없고 발주자가 이를 이유로 직접지급하지 않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은 아니다. 즉 직접지급금액의 확정(직접지급의무)의 전제이다. 일반적으로 직접지급금액은 원사업자의 기성검사 및 발주자 또는 감리자 등의 승인(검수)에 의해 확정될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비협조 등으로 확정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수급사업자간 합의에 의할 수 있다.

- 발주자의 직접지급한도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액이 직접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보다 적은 경우 발주자는 원래 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범위에서 직접지급하면 된다.

[예] 발주자가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미 원사업자에게 기성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거나 하도급낙찰비율이 원도급낙찰비율보다 높은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금금 중 미공제금이 남아 있을 경우 발주자는 직접지급하기에 앞서 미공제 선금금을 상계하고 직접지급할 수 있다.



■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 위반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기(기한)

현행 법규에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기에 관해 명백한 규정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발주자가 명백히 직접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표시가 인정될 때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직접지급하지 않고 기압류권자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나 기압류권자 등에 지급하는 경우, 직접지급요청에 대해 직접지급할

수 없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

■ 발주자인 행정기관이 직접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조치

- 행정기관 등이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경제주체로서 청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발주자인 행정기관 등의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장에 대해 직접 시정조치한다.